

비적격합병

피합병법인(합병 직전)

자	산	10,000	부	채	4,000
			자	본	금 3,000
			주	발	초 2,000
			이	잉	1,000

⇒

합병법인 분개(합병시)

자	산	15,000	부	채	4,000
			자	본	금 2,000
			주	발	초 6,000
			매	수	차익 3,000

견해 1

견해 2(법)

→ 의제배당×

의제배당×

→ 의제배당○

의제배당×

적격합병

피합병법인(합병 직전)

자 산	10,000	부 채	4,000
		자 본 금	3,000
		주 발 초	2,000
		이 잉	1,000

⇒

합병법인 분개(합병시)

자 산	15,000	부 채	4,000
		자 본 금	2,000
		주 발 초	6,000
		매수차익	3,000

⇒

합병법인 실질(합병시)

자 산	15,000	부 채	4,000
		자 본 금	2,000
		의제배당 대상 외	3,000
		의 제 배 당 대 상	이 잉 1,000 평가 차익 5,000

계산순서

전입순서

→

②

①

→

①

②